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179

발의연월일: 2021. 12. 30.

발 의 자:조경태·김용판·조명희

배현진 · 김선교 · 서정숙

이주화 • 정동만 • 하영제

황보승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서울대학교병원은 국내의 대표적인 대학병원으로서 의학,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·연구와 진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학 발전을 도 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, 로봇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보건의료 환경 및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면서 국가보건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학·이학·공학이 융합된 다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와 선진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 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 원·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 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호의2 및 제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의학계와 이공계[이학(理學)·공학(工學)을 말한다)] 간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(이하 "융합의학"이라 한다)의 교육 및 연구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)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.

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업) 대학병원은 다음 각	제6조(사업)
호의 사업을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의2. 의학계와 이공계[이학(理
	學)·공학(工學)을 말한다)] 간
	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
	(이하 "융합의학"이라 한다)
	의 교육 및 연구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7조의2(융합의학 전문인력의
	양성)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
	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
	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
	<u>할 수 있다.</u>
	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
	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.